

## 인권침해 제재 동향

- 국경 초월의 인권 법제 대비 필요 -

ESG경영에 있어 빠지지 않고 고려되는 부분은 바로 인권입니다. 세계 구석구석에서는 인권 범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국가의 주권을 방패막이 삼아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선진국 중심으로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여 적용될 여러 인권 관련 법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 1. 배경

2008년, 2억3천만 달러에 이르는 국세를 절취한 러시아 내부 국세 담당 공직자들의 대규모 사기행위를 알아 낸 러시아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Sergei Magnitsky)는 법원에서 그 범행을 증언하였다가 정치적으로 탄압받아 탈세 혐의로 투옥되어 폭행과 고문 등에 시달리다 2009. 11. 옥사하였습니다.

이후 위 공직자들은 면책되었는데,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범죄 행위로 재산을 축적하는 자들이 정작 재산권이 존중되는 서방국가에 금전을 보관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2012년 마그니츠키의 사망과 관련된 러시아 공직자 등 개인 및 관련 법인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법의 지배 책임법(Sergey Magnitsky Rule of Law Accountability Act)"을 제정하였습니다.

미국은 위 법률의 효과를 더 강화하기 위해 2016년 전세계에서의 인권침해 및 부패 연관 개인 및 법인에 대한 표적형 제재의 근거가 되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를 제정하였고, 이와 같은 법률의 실효성에 주목한 국가들은 유사한 종류의 법제를 입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EU 등에서 비슷한 법률이 생겨났고, 미국에서도 최근 신장위구르 소수민족 박해를 막기 위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2. 주요 내용

국가별로 제정된 인권침해 제재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법령	주요 내용
미국	<b>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b> <b>(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 (201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침해 또는 부패에 관한 이유로 외국인을 제재</li> <li>- 인권침해는 초법적 살인, 고문, 기소나 재판 없는 장기간 구금, 생명자유안전에 대한 권리의 명백한 부정 등</li> <li>- 부패는 사적 이익을 위한 개인·공공자산 몰수, 정부계약·천연자원추출 관련 부패, 뇌물 또는 해외 부패 수익 촉진·이전 등 중대한 부패행위를 지시·통제·감독하는 정부 공무원 또는 그의 고위직 상사 또는 지원하는 행위</li> <li>- 비자발급 중단, 비자 취소, 미국 관할 권 내 존재하는 자산동결 및 미국 개인 또는 법인과외의 경제적 거래 금지</li> <li>- 2022. 12. 23. 종료(일몰)</li> </ul>
	<b>행정명령 13818</b> <b>(Executive Order 13818) (201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법률과 유사한 내용</li> <li>- 다만, 제재적용 대상 행위 및 대상자 범위를 확장</li> <li>- 위 법률의 효과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美 바이든 대통령이 2021. 12. 16. 1년 연장하였고, 2022. 12. 12. 1년 추가 연장함</li> </ul>
	<b>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b> <b>(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202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금지 집행에 필요한 전략 마련</li> <li>- 강제노동집행 태스크포스는 관련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서에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품을 채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단체 등의 리스트가 포함</li> <li>- 미 관세국경보호청장(Commissioner of U. 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모든 제품과 위 리스트에 따라 식별된 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1930 관세법 제307조에 근거하여 미국 내 수입 및 입항 금지</li> <li>- 대통령은 위구르인 등 박해받는 집단 구성원 등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외국인(중국정부 관리 포함)을 식별하여 의회에 보고해야하고, 그들에 대해 미국 내 모든 자산과 미국인 소유에 있는 모든 거래를 차단하며, 비자 취소와 입국 불허 등 제재를 부과</li> </ul>
영국	<b>범죄 자금법</b> <b>(Criminal Finances Act) (201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국세청이 영국에서의 납세 의무와 관련있는 경우 해외에서의 탈세 혐의도 추적이 가능하게 함</li> <li>- '설명되지 않은 재산 명령(Unexplained Wealth Order)'을 통해 심각한 범죄나 부패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게는 재산의 출처를 소명 요구</li> <li>- 은행이나 특정인에게 예치된 금전 또는 동산 형태의 범죄수익이나 테러자금을 압수 또는 몰수 가능</li> <li>- 범죄 수익법(the Proceeds of Crime Act)상의 민사적 복구 제도를 확대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외국법 위반의 경우에도 복구 허용</li> </ul>

국가	법령	주요 내용
	<b>제재 및 자금세탁 방지법</b> (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제재로서 자산동결 및 금융서비스 박탈</li> <li>- 입국제재로서 입국 또는 체류금지를 통한 여행 제한</li> <li>- 개인 또는 법인에 제재를 부과하는 사유 중 “중대한 인권침해” 포함</li> </ul>
	<b>세계 인권 제재 법규 (The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b>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제재 및 자금세탁 방지법에 따라 제정</li> <li>- 심각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개인, 법인 등의 자산 동결 및 여행 제재</li> </ul>
캐나다	<b>부패 외국 공직자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법</b> (Justice for Victims of Corrupt Foreign Officials Act)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거주인 또는 해외 거주 캐나다인들은 제재 대상 외국인과 직간접적 자산거래, 직간접적 금융거래, 금융서비스 제공 등 금지</li> <li>- 제재 대상 외국인 캐나다 입국금지</li> </ul>
EU	<b>글로벌 인권침해 제재 체제</b>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및 여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적용</li> <li>- 위 범주에 들지 않더라도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이고 EU 공통 외교 및 안보 정책 목적과 관련하여 심각한 염려를 야기하는 경우 제재 시행 가능</li> <li>- EU 내 개인·법인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자산 제공 금지(상거래 금지)</li> <li>- 제재 대상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li> </ul>

### 3. 시사점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을 본 따 제정된 여러 국가의 마그니츠키類 법령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을 타겟팅하여 표적 제재하므로써,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외교관계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위 법령들은 대다수가 표적 제재 대상이 될 개인과 법인 등의 명단을 만들고,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행정명령 13818에 따른 제재 명단은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웹사이트에서 검색해볼 수 있으며, 2023. 2. 22. 검색 기준 209명의 개인, 257개의 법인 및 157대의 선박이 제재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명단을 만들어 제재하고 항시 업데이트 하고 있으므로 마그니츠키類 법령이 적용되는 국가의 개인, 법인 등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혹시라도 위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 법인 등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명단에 있는 자와 거래 등을 하였다가, 위 법령이 적용되어 갑작스럽게 금융제재, 여행제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령 적용에 신경을 기울여 거래하는 것이 곧 인권을 우선시하는 ESG 경영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국내 인권 관련 법률의 입법 동향도 살펴 봐야 하겠습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s

**신승국**  
미국변호사

T. (+82) 2 6182 8502  
E. [synn@yoonyang.com](mailto:synn@yoonyang.com)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mailto:kwlee@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mailto:klee@yoonyang.com)

**강석준**  
변호사

T. (+82) 2 6182 8505  
E. [kangsj@yoonyang.com](mailto:kangsj@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T. (+82) 2 6003 7674  
E. [hyang@yoonyang.com](mailto: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T. (+82) 2 6003 7470  
E. [khji@yoonyang.com](mailto:khji@yoonyang.com)